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1일, 안상훈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상훈의원)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였는데,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암관리법」, 「치매관리법」 등 유사한 입법례와 달리 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의 수행 주체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두 사업간의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에 불가피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관계법령에 의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2020년 동법 개정 이후 2024년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보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규정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심장혈관질환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심혈관질환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이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특정 질환을 세분화하여 추가하는 것은 다른 질환의 규정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제외의 경우 개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음. 부칙의 경우,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